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45

발의연월일: 2021. 4. 7.

발 의 자:류성걸・권명호・박대수

한무경 · 권성동 · 이철규

최승재 • 윤창현 • 김은혜

홍석준 · 이명수 의원

(119)

제안이유

현행법은 무역거래자 등에게 수출입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와 수출입 물품등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입원료 등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최종 생산된 물품(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물품생산과정에서 실질적 변형을 가해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경우에만 국산으로 표기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중국산 '태양광셀'(태양광모듈의 부품)을 단순조립하여 생산된 '태양광모듈'이 국산으로 표기되어 국내에 유통되는 등 관련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단속 근거가 부재하여 위반행위들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근거도 부재한 실정임.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내생산물

품등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의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를 신설하며,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벌칙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국내 유통질서 수립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통업자 및 판매업자에게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행위를 단속 대상에 포함함(안 제3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 나.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 35조의2 신설).
- 다.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함(안 제53조의2제3호의2 신설 및 제55조·제56조).

법률 제 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기준"을 "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 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국내생산물품등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국내생산물품등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 시를 하는 행위
- 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3.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내생산물품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확인, 그 밖에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① 국내생산물 품등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발급절차, 유효기간, 수수 료와 그 밖에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2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5조제4항 각 호를 위반한 유통업자 또는 판매업자 제55조 중 "제53조의2제1호의2·제2호·제4호의"를 "제53조의2제1호의2· 제2호·제3호의2·제4호의"로 한다.

제56조 중 "제53조의2제1호의2 또는 제2호에"를 "제53조의2제1호의2· 제2호 또는 제3호의2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n | الم احد الد |
|-------------------------|---------------------------|
| 현 행 | 개 정 안 |
| 제35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 | 제35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 |
| 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u>기</u> | 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u>기</u> |
| <u>준</u>) ①·② (생 략) | <u>준 등</u>) ①·②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 |
| | 하다고 인정하여 원산지를 표 |
| | 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 |
| | 한 국내생산물품등을 유통하거 |
| | 나 판매하는 자는 그 물품등에 |
| |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
| | 한다. |
| <u> <신 설></u> | ④ 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 |
| | 시하여야 하는 국내생산물품등 |
| | 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
| | 된다. |
| | 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 |
| | 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
| |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
| | 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
| | 변경하는 행위 |
| | 3.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
| |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원 |
| | 그게 6 나라 6 에 네이의 건 |

<신 설>

<신 설>

<신 설>

제5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 제53조의2(벌칙) -----

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내생산물품등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 시방법·확인, 그 밖에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다.

제35조의2(국내생산물품등의 원 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① 국 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에게 원산지증명 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의 발급기준·발급절차, 유효기 간, 수수료와 그 밖에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 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 3. (생 략) <u><신 설></u>

4. (생략)

제55조(미수범) 제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제4호·제6호 및 제53조의2제1호의2·제2호·제4호·제4호·제6호 및 제53조의2제1호의2·제2호·제2호·제4호의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56조(과실범) 중대한 과실로 <u>제</u> 53조의2제1호의2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
|---------------------------|
| 3의2. 제35조제4항 각 호를 위 |
| 반한 유통업자 또는 판매업자 |
| 4. (현행과 같음) |
| 제55조(미수범) |
| |
| <u>제53</u> 조의2제1호의2·제2호·제 |
| 3호의2·제4호의 |
| |
| |
| 제56조(과실범)제 |
| |
| 3호의2에 |
| |
| • |